

`24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(제1차) 정기공고

해외 현지 진출(예정)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분쟁·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2. 29.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1. 사업개요

총괄 / 주관기관 : 특허청 / 한국지식재산보호원

사업목적

○ 해외 진출(예정) 중소기업¹⁾·중견기업²⁾ 대상으로 지재권 권리보호 및 분쟁·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

1) 「중소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

2)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
지원대상

○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(예정)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

지원대상국가 : 해외지식재산센터(10개소) 관할 총 40개 국가

| 해외 IP센터 | 북미 (LA) | 미국동부 (워싱턴) | 동북아 (베이징) | 중국 남부 (광저우) | 일본 (도쿄) | 유럽·러시아 (프랑크푸르트) | 동남아 동부 (호치민) | 동남아 서부 (방콕) | 서남아·중동 (뉴델리) | 중남미 (멕시코시티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국가 (40개국) | 미국 서부, 캐나다 등 | 미국 동부 | 중국 북부, 몽골 대만 등 | 중국 남부 (홍콩, 마카오) | 일본 | 독일, 영국, 프랑스, 스페인, 러시아, 이탈리아, 튀르키예, 스위스, 네덜란드, 스웨덴 | 베트남, 필리핀, 호주, 뉴질랜드, 싱가포르 | 태국, 인니, 말레이시아, 캄보디아, 미얀마 | 인도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UAE, 사우디, 카자흐스탄, 이집트 | 멕시코, 브라질, 칠레, 페루, 아르헨티나, 콜롬비아, 에콰도르 |
| | 2개국 | | 3개국 | | 1개국 | 10개국 | 5개국 | 5개국 | 7개국 | 7개국 |

2. 지원내용

□ 세부 유형별 지원내용

○ 권리보호 지원

- 현지에서 특허·상표·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
 - * 상표·디자인은 1국가·1표장·1상품류를 1건으로 취급하며 국가, 표장, 상품류 추가 시 각각 개별건으로 취급(개별건마다 신청서 작성 필요)
-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

| 지원유형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(건 최대) | | 정부지원비율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권리보호 |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허·상표·디자인출원 비용지원 ○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상표·디자인출원 비용 중 일부 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| 특허 | \$3,000* | (중소) 50% (중견) 50% | ▶연간 10건/1社, 총 \$5,000 한도 |
| | | 상표, 디자인 | \$1,500* | | |

* 권역·국가별 건당 지원한도 상이(붙임1 참조)
(지원한도는 총 소요비용이 \$6,000일 때 50%인 \$3,000불까지 지원을 의미)

○ 분쟁·침해 초동대응 지원

-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·절차 지원
- 법률의견서, 감정서, 비밀유지협약 등 작성 및 검토 비용 지원

| 지원유형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(건 최대) | 정부지원비율 | 비고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분쟁·침해 초동대응 | <input type="checkbox"/> (지재권침해피해)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피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구제에 따른 비용 및 제반 절차 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(지재권분쟁) 지재권 분쟁시 현지 로펌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불필요한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의견서, 감정서(FTO 등) 등 작성검토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(기타 지재권이슈 대응) 비밀유지협약서(NDA), 지재권 관련 계약서 조항 및 라이선스 계약 등 작성 및 검토 지원 | \$10,000 | (중소) 70% (중견) 50% | ▶연간 2건**/1社, 총 \$20,000 한도 ▶침해실태 조사만 진행시 \$6,000 한도 ▶행정단속만 단독 지원은 불가 |

* 동일사항(동일제품·권리의 동일내용·분쟁상대방 등)으로는 반복 지원 불가

○ 심층 법률자문 지원(무료)

- 지재권 법률 검토, 권리 피침해 여부,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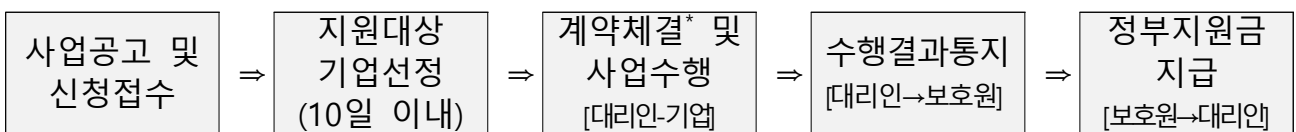
| 지원유형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(건 최대) | 정부지원비율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률자문 | □ 기초상담 이후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층자문 제공 | 전액지원 (중소·중견 100%) * 단, 연5회를 초과하여 자문 요청시 타기업 우선 지원 | | ▶ IP센터 전문가 및 자문로펌이 지원 |

□ 수행대리인 선정방법

- 기업이 직접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상에 등록된 수행대리인 POOL* 내 해당국가 수행대리인 중 하나를 컨택하여 비용견적 등 세부사항 문의**
 - * 수행대리인별 지원가능 국가는 별첨1 참조
 - ** 직접 문의가 어려운 경우 해외IP센터(붙임2)에 수행대리인 정보 문의 가능
- 기업과 수행대리인 간 상기 비용견적 등 협의가 완료되면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에서 사업신청 시 해당 수행대리인을 지정
- 수행대리인 POOL에 등록되지 않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 전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개별 문의 요망
 - * 별도의 절차(대리인등록신청서 제출)를 거쳐 수행대리인 POOL에 등록

□ 지원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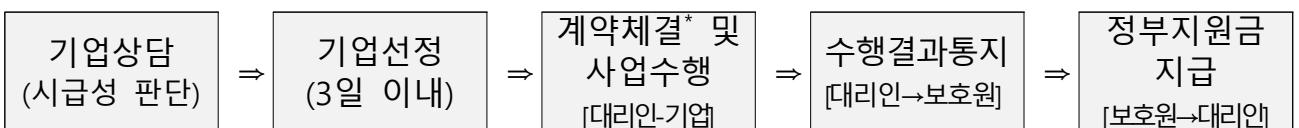
- (정기모집) 권리보호, 분쟁·침해 초동대응 공통 적용



- *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 체결시 수행대리인에 기업부담금 입금(증빙자료 개별 제출) (계약시점에서 기업부담금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행대리인의 요구 보증금으로 대체 가능)

- (수시모집) 분쟁·침해 초동대응이 시급한 사항(패스트트랙 적용)

-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가 기업과 상담을 통해 시급성을 우선 판단하고,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


- *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 체결시 수행대리인에 기업부담금 입금(증빙자료 개별 제출) (계약시점에서 기업부담금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행대리인의 요구 보증금으로 대체 가능)

- 심층법률 자문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에 우선으로 직접 신청접수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 기간

○ 정기모집

- 신청 기간 : '24. 2. 29.(목) ~ 3. 20.(수) 18:00

*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인정됨

- 결과 통보 : 모집 완료 후 10일 이내

*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수시모집(패스트트랙)

- 신청 기간 : 상시*

* 반드시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우선 상담을 통하여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

- 결과 통보 : 접수 후 3일 이내

*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 방법

- 정기모집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*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 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('24.2월말 오픈 예정)

* 접속링크 : www.ip-navi.or.kr/ipcenter

<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>

- 2개 이상의 권리(국가)에 대한 출원지원 신청 등의 경우 시스템 상에서 반드시 각각의 권리(국가)별로 신청 필요
- 분쟁·침해초동대응 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업로드

- 수시모집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(1600-9099) 또는 해외IP센터*와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

* 검색창에 "지재권분쟁대응센터" 입력 후 접속하여 지원사업(해외지식재산센터) 메뉴에서 해외IP센터 연락처(전화번호/이메일) 확인 가능

[정기모집 시 기업 제출서류]

| 구분 | 제출서류명 | 필수 | 해당시 | 제출방법 |
|---|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업 제출서류 | 1.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및 사업 신청서 | ○ | | 온라인 입력 |
| | 2. 기업규모 증명서(중소, 중견) * 유효기간 확인 필수 | ○ | | 신청시스템 에 파일 업로드 |
| | 3. 사업자등록증(명원) | ○ | | |
| | 4. 직접 또는 간접적인 수출계획* | ○ | | |
| | 5. 지원받고자 하는 지재권 등록원부 또는 출원 증명원(최대 10개) * 특허의 경우 지원 희망국가 언어/법적요건을 갖춘 명세서 제출 필수 | ○ | | |
| | 6. 국세납세증명서 * 유효기간 확인 필수 | ○ | | |
| | 7. 지방세납세증명서 * 유효기간 확인 필수 | ○ | | |
| | 8. 수행대리인 등록심사 요청서 (수행대리인POOL 외 수행대리인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등록심사 통과 시 계약 체결 가능) | | ○ | |
| * 수출실적증명서, 해외기업 인보이스, 해외전시회 참가증빙, 영문 브로슈어 및 수출계획서(필요성, 시급성 등 간 략하게 기재 가능) 등 포괄적으로 인정 (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(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)) | | | | |

4. 세부운영계획

□ 선정기준 및 선정평가 결과

- (선정기준) 내·외부 심사위원*이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
모집 회차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기업 순으로 지원대
상을 선정

* 수시모집의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내부 심사위원으로 심사 진행

** 선정심사기준 : 붙임3 참조

- (결과확인) 회원정보에 기재된 이메일로 심사결과 통보하며 해외
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 상의 ‘지원기업 계약관리’ 에서도 확인 가능

□ 지원기업-수행대리인 간 계약 체결

- 지원기업은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수행대리인과
계약체결 실시(일정 초과예상시 반드시 보호원으로 연락 필요)

- 지원기업과 수행대리인은 계약 조건*, 계약 기간** 및 과제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

* 출원 요청 건수, 행정단속 포함여부 및 최종결과물 구성 등

**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

-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서 날인 및 기업부담금을 수행대리인에게 입금(정해진 기한내 미납부시 선정 취소 가능)

- 지원기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원사업 시스템에 계약서 사본 및 기업부담금 입금 증빙자료 업로드

□ 사업결과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

- 수행대리인이 사업수행 완료* 시 지원기업 및 보호원에 통지하고, 보호원은 사업결과 내용을 확인 후 수행대리인에게 정부지원금 지급
- * 지원기업에서 미동의 시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부지원금 지급여부 결정
- 수행대리인은 반드시 지원기업 선정 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업 완료 필요(미완료 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)

□ 유의사항

- 계약 체결 이후라도 지원제한 조건 사유 해당, 신청요건 위반 사항, 기타 심각한 신의성실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지원 거절 가능

□ 문의처

- 대표번호/이메일 : 1600-9099, ipcenter_help@koipa.re.kr

붙임 1. 국가별 지원한도

2. 해외IP센터 연락처

3. 선정심사 기준

별첨 1. 수행대리인별 지원가능 국가(별도파일)

2. 지원제한 조건

붙임1

권역·국가별 지원한도

| 권역 | 국가 | 지원한도(USD), 건당 | |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| | 상표 | 디자인 | 특허 |
| 북미 | 미국 | 700 | 1500 | 2500 |
| | 캐나다 | | | |
| 중남미 | 멕시코 | 400 | 450 | 750 |
| | 브라질 | | | |
| | 칠레 | | | |
| | 아르헨티나 | | | |
| | 콜롬비아 | | | |
| | 페루 | | | |
| | 에콰도르 | | | |
| 동북아 | 일본 | 500 | 500 | 1500 |
| | 중국 | 300 | 300 | 1000 |
| | (마카오) | | | |
| | 대만 | 650 | 650 | 1200 |
| | (홍콩) | | | |
| | 몽골 | 500 | 800 | 1300 |
| 동남아/오세아니아 | 베트남 | 300 | 500 | 1500 |
| | 태국 | | | |
| | 인도네시아 | | | |
| | 필리핀 | | | |
| | 말레이시아 | | | |
| | 캄보디아 | | | |
| | 미얀마 | 450 | 450 | 1500 |
| | 싱가포르 | | | |
| | 호주 | | | |
| 뉴질랜드 | 500 | 1500 | 2000 | |
| 서남아/중동 | 인도 | 300 | 200 | 1500 |
| | 방글라데시 | | | |
| | 파키스탄 | | | |
| | 카자흐스탄 | | | |
| | 이집트 | 1000 | 1000 | 3000 |
| | UAE | | | |
| 사우디 | 1000 | 600 | 2500 | |
| 독일 | | | | |
| 러시아 | | | | |
| 영국 | | | | |
| 프랑스 | | | | |
| 스페인 | | | | |
| 이탈리아 | | | | |
| 튀르키예 | | | | |
| 스위스 | | | | |
| 네덜란드 | | | | |
| 스웨덴 | | | | |

| 센터명 (소재지) | 전화번호 | 이메일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북미IP센터 (로스앤젤레스) | +1-323-424-4005 | la_ipcenter@koipa.re.kr |
| 미국동부IP센터 (워싱턴 D.C.) | +1-312-909-6567 | washington_ipcenter@koipa.re.kr |
| 동북아IP센터 (베이징) | +86-134-8885-0387 | beijing_ipcenter@koipa.re.kr |
| 중국남부IP센터 (광저우) | +86-20-2208-1603 | guangzhou_ipcenter@koipa.re.kr |
| 일본IP센터 (도쿄) | +81-3-6362-0500 | tokyo_ipcenter@koipa.re.kr |
| 유럽·러시아IP센터 (프랑크푸르트) | +49-69-2429-9299 | frankfurt_ipcenter@koipa.re.kr |
| 동남아동부IP센터 (호치민) | 02-6250-0868 | hochiminh_ipcenter@koipa.re.kr |
| 동남아서부IP센터 (방콕) | +66-2-35-1558 | bangkok_ipcenter@koipa.re.kr |
| 서남아·중동IP센터 (뉴델리) | +91-11-4230-6300(312) | newdelhi_ipcenter@koipa.re.kr |
| 중남미IP센터 (멕시코시티) | +52-55-5514-3173(728) | mexicocity_ipcenter@koipa.re.kr |

□ (1단계) 지원기업 적격여부 사전심사 → 미충족시 지원대상 탈락

- 수출 또는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
- 지원 제한조건(별첨2 참조)에 해당하지 않고, 당해연도 최대 지원 건수 범위 이내일 것

□ (2단계)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 → 고득점순 우선 지원대상 선정

| 평가항목 | 평가 내용 | 배점 | 평가기준 및 점수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
| 기업규모 | 중소, 중견 기업 구분 | 20 | (소기업) 20점, (중기업) 15점, (중견기업) 10점 |
| 지원 항목 | 지원 신청 배경 및 항목 | 2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 : 15~25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 IP침해분쟁(경고장 접수, 침해피해 등) 대응 법률서비스 : 25점 - 해외 IP침해분쟁 예방 법률서비스 : 20점 - 해외 수출 관련 법률서비스(라이선스 계약, NDA, 지재권 관련 내용 검토 등) : 15점 ■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: 5~15점 (세관 등록 15, 상표·디자인 10, 특허 5) |
| 수출 기여 | 실제 수출 여부, 수출 계획의 구체성 등 | 1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률서비스 신청국가에 대한 해외 현지 수출 실적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: 15점 - 수출 실적이 명확하지 않으나 수출 예정이거나 수출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: 10점 - 수출실적도 명확하지 않고, 수출여부도 불명확한 경우 : 0점 |
| 최근 수혜 여부 |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수혜 이력 | 2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연도 및 직전 2년 이상 해외IP센터 지원(법률서비스, 출원) 실적이 없는 경우 : 20점 - 신청연도 및 직전연도에 해외IP센터 지원(법률서비스, 출원)실적이 없는 경우 : 10점 - 신청연도에 해외IP센터 지원실적이 없고, 그전에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 : 0점 |
| 지원 필요성 | 지원시 경제적 효과 등 높고,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| 20 | 정성적 평가 : S(20), A(15), B(10), C(5) |
| 총 계 | | 100 | |

※ '심층 법률자문'은 '(1단계) 지원기업 적격여부 사전심사'만 통과하면 신청순으로 모두 지원. 다만, 신청이 많은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

< 별첨 2 >

지원제한 조건

- 휴 · 폐업 기업
-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한국기업이거나 한국 국적의 개인인 경우
-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, 지점, 사무소 등인 경우
(단,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)
-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신청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
- 사업 지원으로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
- 기타 지원사업이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
- 신청 기업이 타인의 상표, 특허 또는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. 다만, 타인과 신청 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
- 종전(최근 3년)에 지원받은 사항과 동일 사안의 신청인 경우